#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모경종ㆍ이원택ㆍ최민희

서미화 • 윤건영 • 박희승

강훈식 • 홍기원 • 김한규

김남근 · 김문수 · 박민규

양부남 • 이훈기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 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누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지역 인프라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특별교부세 교부의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신설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상에 선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분리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도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법률 제 호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 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나.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분리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다만,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3년까지로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	1.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u>
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u>해당하는</u>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	
<u>가 있는</u> 경우: 특별교부세 재	
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u>&lt;신 설&gt;</u>	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
	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u>&lt;신 설&gt;</u>	나.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분
	리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u>가 설치되는 경우(다만,</u>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한
	<u>다)</u>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